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방법)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문서(공정거래위원회 승인받은 약관)로서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원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급여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고시에서 정한 수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만큼 산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매년 고시에 따라 정한다.

③ 본인 일부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또는 감정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0일 내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1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이용료 납부는 수납 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보호자)의 납부방법 변경 요청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발급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센터와 수급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 센터의 의무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 준수할 의무 (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③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 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장은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제가 합의된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수급자가 급여계약 해제를 요청한 때
7. 계약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